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유럽연합, 식품 첨가물 아질산염 및 질산염 사용 기준 강화 (2023년 10월 29일 발효)



SPS

이슈 바로가기 ▶

- 2023년 10월 9일,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「(EU) 2023/2108」를 통해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「(EC) No 1333/2008」의 부록 II 와 위원회 규정 「(EU) No 231/2012」의 부록을 개정하고 식품 첨가물인 아질산염 및 질산염의 사용 기준을 강화함
- 이번 개정안은 식품에 사용된 아질산염 및 질산염이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류(nitrosamines)를 생성할 수 있다는 과학적 평가 결과와 식품 보존 기능을 모두 고려한 것임
- 주요 내용
 - 대상 품목: 아질산칼륨(E249), 아질산나트륨(E250), 질산나트륨(E251), 질산칼륨(E252)
 - 대상 식품 및 사용 기준: 치즈류, 육류, 수산물 제품 등에 최대 허용 수준을 준수하여 사용 가능
 - 발효일 이전 출시 제품에 대한 전환 기간 적용:
 - 부록 1의 규정이 충족되지 않은 식품: 품질 유지기한(date of minimum durability) 또는 소비 기한(use-by date)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음
 - 부록 2의 규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: 2024년 4월 29일까지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, 대상 식품의 품질 유지기한 또는 소비 기한까지 계속 판매할 수 있음
 - 발효일: **2023년 10월 29일**

출처 :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,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(EU) 2023/2108, 2023. 10.09

인도네시아,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요구 규정 발표 (2023년 9월 18일 발효)



SPS

이슈 바로가기 ▶

- 인도네시아 식약청(BPOM)은 2019년 BPOM 규정 제17호 「건강보조식품 품질 요건」을 폐지하고 신규로 2023년 BPOM 규정 제24호 「건강보조식품의 안전 및 품질 요건」을 발표함
- 주요 내용(규정 주요 내용)
 - 본문
 -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건강보조식품은 유통 허가를 받기 위해 해당 규정에 명시된 안전 및 품질 요건을 충족해야 함
 - 이미 유통 허가를 받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, 본 규정 공포 후 2년 이내에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함
 - 부록

구분	내용	구분	내용
부록 1	오염 물질을 함유하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원료를 첨가한 건강 보조 식품	부록 4	식품첨가물의 최대 사용량
		부록 5	경구용 제품의 형태 및 완제품 테스트 항목
부록 2	특정 유형의 단체 복합체(simplicial) 분말	부록 6	의약 화학물질, 향정신성 물질, 미약 또는 중독성 물질에 대한 정성적 식별 시험에 대한 규정
부록 3	천연 원료에서 활성 성분을 추출하는데 사용되는 용매의 잔류 허용 기준	부록 7	건강 보조 식품 검토 신청서
 - 시행일: **2023년 9월 18일** (본 규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함)

출처 : BPOM,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24 TAHUN 2023, 2023.09.18

러시아, 주류 원료, 와인 및 과실주류 개별 소비세 인상 (2024년 5월 1일 시행)



기타(식품)

이슈 바로가기 ▶

- 러시아 정부는 연방세법 제 193조 「러시아 연방정부 소비세율 코드(파트 2)」를 개정하여 주류 원료 및 특정 유형의 알코올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 인상 계획을 발표함
- 주요 내용
 - 대상 품목
 - 주류 원료: 포도즙, 과일즙, 발효 과일 및 와인 재료
 - 특정 주류: 와인(주정 강화(리큐어) 와인 제외), 과일 알코올 제품, 스파클링 와인, 와인 및 포도 함유 음료, 정제 주정의 첨가 없이 제조된 과일 알코올 음료
 - 대상 품목별 인상 계획
 - 와인, 과일 알코올 제품, 와인 및 포도 함유 음료 등 (1L/당): 108루블
 - 스파클링 와인(1L/당): 141루블
 - 주류 원료(1L/당): 108루블
 - 시행일: **2024년 5월 1일**

출처 : RETAIL.RU,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решил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высить акцизы на отдельные виды алкогольной и табачной продукции, 2023.10.2

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

WEEKLY NEWSLETTER



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

캐나다, 자연 건강 식품(건강 기능 식품)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



TBT

이슈 바로가기 ▶

- 캐나다로 수출되는 인삼 등 한국 건강 기능 식품은 자연 건강 제품(NHP)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, 이에 자연 건강 제품(NHP)의 라벨 표기 기준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
- 주요 내용(캐나다로 자연 건강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)
 - 1) 자연 건강 식품의 내부 포장 및 외부 포장 표시면에 표기해야 하는 제품 정보
 - ① 주 표시면: 브랜드 이름/제품 번호/제형/멸균된 제품인 경우 “멸균(sterile 또는 sterile)” 문구 표시/중량, 단위, 수량 기준의 총 중량
 - ② 기타 표시면: 제품 허가 보유자 또는 수입업체의 이름, 제품 성분의 이름, 권장 사항 등을 표시
 - ③ 외부 라벨: 함유된 ‘비약용 성분’의 정성 목록(일반 명칭으로 작성), 수은의 양(포함된 경우)
 - 2) 자연 건강 제품의 라벨 표기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
 -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, 문구, 선언(declaration)은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되어야 하며, 통상적인 구매 및 사용 조건 하에서 구매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함
 - 라벨이 한 개인 경우 상기 규정된 표기 정보를 해당 라벨에 모두 표시해야 함
 - 법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법률(ACT), 식품의약품 규정 또는 자연 건강 제품 규정을 언급해선 안됨
 - 영어 또는 프랑스어에 상응하는 명칭이 없는 경우 다른 언어로 표시해야 함

출처 : Health Canada, Guidance Documents - Legislation and guidelines - Natural health products

유럽연합,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

- 한국 식품 기업은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식품보충제 관련 라벨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수출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
- 주요 내용(유럽연합으로 식품보충제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라벨링 기준)



TBT

이슈 바로가기 ▶

구분	내용
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별도 표기 정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품을 특징짓는 주 영양소 또는 물질의 이름, 또는 특성 - 일일 섭취 권장량 - 제품에 명시된 일일 섭취 권장량을 초과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 - 식품보충제를 다양한 식단의 대체제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설명 문구 -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 문구
표시 및 광고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《EC No 2002/46 식품보충제 지침》이 적용되는 제품의 명칭은 ‘식품보충제’로 판매되어야 함 - 인간의 질병을 예방, 치료 또는 치유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특성을 언급해선 안 됨 - 균형 잡힌 다양한 식단이 일반적으로 적절한 양의 영양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언급을 포함해선 안 됨
영양성분 표시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물질의 함량은 제품 라벨에 숫자로 표시해야 하며, 비타민과 미네랄의 사용 단위는 《EC No 2002/46 식품보충제 지침》의 부록 1을 따라야 함 - 영양소 및 기타 물질의 함량은 제품의 1회 섭취 권장량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- 비타민과 미네랄에 대한 정보는 경우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되어야 함

출처 : EUROPA, Labelling food supplements(최종 업데이트 : 2023.07)

베트남, 한국 수출 식품이 주의해야 하는 식품 표시 기준 종합 공고



TBT

이슈 바로가기 ▶

- 2022년 베트남은 제품에 대한 라벨링 규정(Decree 43/2017 ND-CP)을 수정, 보완하는 시행령 《Decree 111/2021/ND-CP》을 발표하여, 한국 식품 수출 기업은 변경된 기준 확인이 필요함
- 주요 내용(베트남으로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라벨링 기준)
 - 1) 식품 라벨의 필수 표기 정보
 - 제품명/제품 책임자(책임업체)의 이름과 주소/원산지/총 중량/생산일자/만료일자(유효기간)/성분 및 성분 중량, 영양 구성 정보/경고문구/섭취 방식에 대한 지침
 - 2) 원산지 표기 기준
 - ① 원산지 표기 주체: 제조업체,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
 - ② 원산지 표기 문구
 -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이름을 “made in”, “manufactured in”, “country of origin”, “country”, “manufactured by”, “product of” 중 하나로 표기해야 하며 약칭으로 표기해선 안됨* (*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의 표기 기준은 별도로 존재함)
 - 3) 영양성분표:
 - 모든 식품은 「식품의 영양성분 라벨링 지침(초안)」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영양성분표를 부착해야 함

출처 : Eurofins, Update on food nutrition labeling regulations 2022, 2022.05.12